

2018. 9. 1.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남·여), 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경채 -

경찰학개론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1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 ②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 ③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해설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 문제로 본다.

[핵심정리] 델라트르(Delattre)의 경찰부패의 이해

구분	내용
전체사회 가설 (society at large hypothesis)	윌슨(Wilson)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이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이다(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 사회 전체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구조원인 가설 (structural hypothesis)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등이 주장한 가설로 후임 경찰이 그들의 선임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썩은 사과 가설 (rotten apple hypothesis)	① 시카고 범죄위원회(Chicago Crime Commission)가 내린 결론으로 경찰부패는 자질이 없는 경찰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본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 ㉡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 ① ㉠ O ㉡ O ㉢ O ㉣ O
- ② ㉠ X ㉡ O ㉢ O ㉣ O
- ③ ㉠ X ㉡ O ㉢ X ㉣ O
- ④ ㉠ O ㉡ X ㉢ O ㉣ X

해설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신설하고 이를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 내의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시켰고, 그 장으로는 경무사를 두고 경무사로 하여금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범죄인을 체포 수사하여 법사(法司)에 이송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 모두 옳은 설명이다.

3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해설 ① 경찰법 제1조
 ② 동법 제2조 제2항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11조 제2항).
 ④ 동법 제11조 제5항

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 3 항목이 옳다.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 ㉡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7호
-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1항·제2항).
- ㉤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5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해설** →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② 동징계령 제12조 제3항
 ③ 동징계령 제18조 제1항

- ④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① 경찰사명 :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 ② 경찰정신 :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③ 규율 :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④ 책임 :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 ①②③ 지문은 모두 옳지 않고, ④ 지문만 옳다.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제3조)

<p>1. <u>경찰사명</u> :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p> <p>2. <u>경찰정신</u>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p> <p>3. <u>규율</u> :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예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p> <p>4. <u>단결</u> :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p> <p>5. <u>책임</u> :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p> <p>6. <u>성실·청렴</u> :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p>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해설**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 ④ 동법 제7조

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②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의2
- ② 동법 제9조
- ③ 동법 제10조의2 제1항
-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동법 제10조 제5항).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②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없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 2 항목이 옳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단체도 얼마든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있다.
- ㉢ 동법 제16조 제2항
-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5조). 따라서 이러한 집회의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1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 ②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①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7호

- ② 동규칙 제2조 제3호
- ③ 동규칙 제2조 제4호
-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9호).

[핵심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처벌특례 항목

구분	내용(관련 도로교통법 조항)	
1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지시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제13조 제3항)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제17조 제1항·제2항)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4조)
6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7조 제1항)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43조 등)
8	음주·약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44조 제1항, 제45조)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13조 제1항·제2항)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39조 제3항)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 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12조 제1항·제3항)
12	화물추락 방지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39조 제4항)

17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②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 ①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 ②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 ③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 ④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해설 → ①②④ 이들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찬성론의 논거이고, ③ 이는 반대론의 논거이다.

[핵심정리] 경찰수사권 독립 논쟁

구 분	내 용
찬성론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국민의 편익 저해). ② 경찰수사기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고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한다(명령통일원리 위배). ③ 현재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현실과 규범의 괴리). ④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와 인력동원 등으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경찰업무의 과중화). ⑤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검찰로의 권력집중). ⑥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보다는 경찰에 집중되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반대론	①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②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적정절차와 인권존중). ③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全)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 미흡으로 인한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법집행의 왜곡방지). ④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경찰로의 권력집중).